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527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형두

변론 종결2021. 3. 18.

판결 선고2021.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15. 체결된 50,000,000원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076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0. 24. 'C은 D에게 36,126,034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1. 10. 27. C에게 송달되어 2011. 11.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한 후 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이 2019. 2. 7. C에게 송달되었는데, 2020. 7. 23.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합계 87,846,949원(= 원금 29,5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346,9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5. 10. 15. 임대인 E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F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지하고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자간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C이고, C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과 E이다.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15. 임대인 E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F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2019. 12. 3. 임대인 E의 처 G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C이 2015. 10. 15. 피고 명의를 빌려 임대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차웅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바대로 기재한다.